

가금류 농가 대상 AI 미신고 · 신고지연 조치사항

출처 : 농식품부 (2017.6.4)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◎ 최근 일부 AI 발생 농장의 경우 의심축 신고가 지연되어 AI 바이러스 확산 요인으로 작용 우려 제기
- ◎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시,
 - ① 사료운반 차량 및 알 출하 차량 등의 지속적인 농장 출입에 따른 다른 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
 - ② 감염가축의 바이러스 배설로 발생 농장의 심 오염에 따른 인근전파 위험도 상승
- ◎ 도축장으로 가축출하시, 도축장 바이러스 오염으로 도축장을 통한 AI 전파 위험도 증가

2. 신고지연 및 미신고 판단기준

- ◎ 신고지연 ※ 아래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
 - ① (폐사율) 1일 평균※ 대비 2~3배 높게 폐사율 증가
 - ※ 산란계 0.02%, 육계 · 육용오리 0.05~0.07%
 - ② (산란율) 평균 산란율※에 비해 갑자기 3~5% 이상 산란율 저하
 - ※ (종오리) 80~85%, (산란계) 80% ; 농가별 산란율은 일정수준 유지됨
 - ③ (임상증상) 졸거나 청색증이 확인되는 경우
- ◎ 미신고
 - 가축방역관이 현장 예찰과정에서 신고지연 기준 수준 이상의 폐사율 증가, 산란율 감소 또는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
- ◎ 방역 당국의 폐사 실태 등 현장 확인
 - 농가 의심신고 후, 방역당국의 현장 확인※ 시 신고일 기준 최근 수일간의 폐사율, 산란율 및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기록
 - 축주 등 농장관계자의 진술 내용은 참고하되 확인 필요

※ 의심축 확인을 위한 시·도(시험소) 및 시·군의 시료채취 등 현장 확인 또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의 해당의심신고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

3. 향후 조치 계획

◎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

- 검역본부 등 방역당국의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해당 지자체 경찰인력을 활용하여 위반사례 면밀히 조사
- 위반사례 확인 시 경찰고발 등 법적 벌칙 규정 엄격 적용
※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 법적 불이익(하단참조)

◎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평시 방역당국의 예찰(전화예찰 포함) 시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여부 지속 파악

◎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적용

- 매몰비용 등을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조치

미신고 또는 신고지연 시 법적 불이익

I.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신고 관련 벌칙 조항

- 제11조(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)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* 가죽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·군수 또는 가축 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 - * ①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, ②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 난임상증상이 있는 가축
- 제56조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제11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등*
 - *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- 제57조(벌칙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제11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·사료 판매자/ 가축운송업자

II.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 보상금 관련 규정

- 관련 조항 : 법 제48조(보상금 등) 및 시행령 제11조(보상금 등) 관련 [별표 2]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·경감 기준
- [별표 2] 2호 나목.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감액
 -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: 100분의 20
 -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신고 : 100분의 40
 - 미 신고 : 100분의 60
- [별표 2] 3호 나목. 신속한 신고 시 보상금 감액의 경감 기준
 -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신고 : 100분의 10